

의안번호	2206818
의 퇴 인	황운하 의원
회 답 일	2025. 3. 10.
추 계 번호	24B6023
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 (항공안전정책기본 계획의 수립 등)	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함(제2항) 6. 승무원·운항관리사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<신설> ※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“승무 원·운항관리사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” 추가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조 (항공안전정책기본계 획의 수립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“승무원·운항관리사의
근무조건 및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” 추가(안 제6조제2항제6호 신설)
 -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¹⁾에 포함

1) 「항공안전법」 제6조(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항공안전정책에 관한 기
본계획(이하 "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항공안전정책의 목표 및 전략

되어야 할 사항에 “승무원·운항관리사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”을 추가하는 것임

- 국토교통부에 따르면, 현재 제2차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(2023~2027)이 시행 중이고, 해당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에 1억원이 집행되었음(한국교통연구원(KOTI) 수행, '22.2.~12.)

○ 현행법 제56조²⁾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,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근무시간의 제한기준을 따르는 방법 또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속 운항승무원, 객실승무원 및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여야 하는데,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근무시간의 제한기준을 따르는 방법으로 승무원 등의 피로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

- 현행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하는데,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에 피로위험관리시스템(FRMS³⁾) 운용 승인을 요청한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없는 상태임

○ 국토교통부에 따르면, 국토교통부는 과학적인 피로관리를 통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운항분야 피로위험관리시스템(FRMS)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왔고, 2024년에도 운항분야 피로위험관리시스템(FRMS) 운영지침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운항분야 피로위험관리시스템(FRMS) 승인지침 제정 등을 검토하고 있음

-
2. 항공기사고·경량항공기사고·초경량비행장치사고 예방 및 운항 안전에 관한 사항
 3. 항공기·경량항공기·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·정비 및 안전성 인증체계에 관한 사항
 4. 비행정보구역·항공로 관리 및 항공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
 5. 항공종사자의 양성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
 6. 그 밖에 항공안전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2) 「항공안전법」 제56조(승무원 등의 피로관리) ① 항공운송사업자,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속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(이하 "승무원"이라 한다)과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여야 한다.

1.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원의 승무시간, 비행근무시간, 근무시간 등(이하 이 조에서 "승무시간등"이라 한다) 또는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의 제한기준을 따르는 방법
 2.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방법
- ② 항공운송사업자,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이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. 승인 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3)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

- 국토교통부에 따르면, 운항분야 피로위험관리시스템(FRMS) 구축을 위해서는 향후 항공종사자(승무원 등) 피로 관련 데이터 수집, FRMS 구축 효율화 방안 연구, 항공사로부터 FRMS 관련 데이터 수집 및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의 추가적인 연구 및 절차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

[표 1] 운항분야 피로위험관리시스템(FRMS) 구축 관련 연구용역 실시 현황

연도	용역명	기간	금액(억원)
2015	한국형 피로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연구	계약일~15개월	3.0
2018	한국형 피로위험관리시스템 기반 구축방안 연구	계약일~300일	3.0
2024	운항분야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연구	계약일~180일	0.6

자료: 국토교통부

- 개정안에 따라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 “승무원·운항관리사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”을 추가할 경우 승무원·운항관리사의 피로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나, 현 시점에서는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될 피로위험관리 관련 사항의 범위, 방식 등을 알 수 없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용역의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박인재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인재	02-6788-4650	powerreset@nabo.go.kr